

한국문화연구원 규정

1958. 5. 1 제정

2010. 7. 7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무) 연구원은 인문, 사회, 예능 전반에 걸친 영역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며, 그 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하여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수 연구비 지급
2. 학술논문집 “논총” 발간
3. 한국문화연구원 총서 발간
4.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기타 부수 사업

제 3 조 (원장)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, 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 4 조 (부원장) ① 연구원에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.

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연구위원) ① 연구원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매년 본 연구원에 연구비 보조신청을 한 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.

③ 연구위원의 연구기간 단위는 1년으로 한다.

④ 연구위원은 소관사항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“논총”에 발표한다.

제 6 조 (행정인력)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 7 조 (조직) ① 연구원에 연구실 및 총무부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실은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③ 총무부는 서무, 회계 및 기타 일반사무를 담당한다.

제 8 조 (연구실장) ① 연구실에 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. 연구실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② 연구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 9 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0.7.7)

한국문화연구원 규정

② 위원회는 원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 10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11 조 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 조 (사업계획 등) 원장은 연구원의 당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3 조 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원장은 연구원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원의 경비는 이화여자대학교 예산으로 충당한다.
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관리한다.

부 칙(1958. 5. 1 제정)

이 규정은 195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73. 3. 1 개정)

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81. 8. 17 개정)

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